

#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김옥준상 시상 규정

제정 1997. 12.  
개정 1999. 03.  
2002.  
2013. 09  
2017. 09  
2023. 04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김옥준상(이하 “김옥준상” 이라 함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립취지 및 주체)** 본 상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함)의 설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김옥준 전임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기금은 김옥준 전임 회장이 학회에 위탁한 기부금에 의해 조성되었다. 본 상의 주체는 김옥준상 운영위원회로 한다.

**제3조(시상부문)** 본 상은 매년 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며, 시상부문은 자원환경지질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거나, 또는 창조적이며 능률적인 기술을 개발한 부문으로 한다.

## 제2장 김옥준상 운영위원회

**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)** 김옥준상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함)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며, 별도로 학회의 부회장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.

- 1) 직전·현직 회장, 대한지질학회 현직 회장은 당연직이 된다.
- 2) 그 외, 과거수상자를 포함한 8명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정회원 가운데 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인사로 한다
- 3) 운영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4)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,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5)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와 학회 간 각 회의 내용 및 의견 전달을 담당하며, 운영위원회 투표권이 없다.

**제5조(운영위원회 기능)** 운영위원회는 상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- 1) 상 시행과 관련된 제반계획의 작성 및 집행
- 2) 수상자에 대한 심의 및 선정
- 3)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 및 규약의 제정 및 시행
- 4) 운영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대 업무 수행

## 제6조(운영위원회 운영)

- 1)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위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2) 운영위원회의 회의안건은 재적위원 2/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## 제7조(위원임기)

- 1)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2) 위원장의 연임은 1회에 한 한다.

### 제3장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

**제8조(수상후보자 자격)** 수상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한 자로서,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을 15년 이상 연속 유지한 자로 한다.

- 1) 투철한 창조정신과 탐구정신으로 전문분야의 연구, 교육, 또는 창의적 기술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
- 2) 성취 또는 축적된 업적들이 관련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
- 3)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인사

### 제9조(수상후보자 추천)

- 1)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호에 정한 추천인이하며, 각 추천인은 1인 또는 1개 단체를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.

역대 김옥준상 운영위원

역대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회장

역대 김옥준상 수상자

학회 이사회

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

### 제10조(추천서 접수)

- 1) 학회는 수상후보자 추천을 공개모집하고, 학회 정기총회 개최일 1개월 이전에 추천인으로부터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첨부된 추천의뢰서를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- 2) 사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추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# 제4장 심사

**제11조(심사기준)** 김옥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또는 심사할 때에는 제8조를 고려하여 판단한다.

### 제12조(수상자)

- 1)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로서,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.
- 2) 수상자는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 단체를 수상자로 할 수 있다.
- 3) 한 연구나 활동이 2인 이상의 공동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, 또는 서로 다른 2개의 업적이 동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들 후보자들을 공동수상자로 할 수 있다.

### 제13조(본상 및 부상)

- 1)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금 한량을 수여한다.
- 2) 제12조 3)항에서 규정한 공동수상의 경우, 상패는 수상자 전원에게 수여하며 부상은 제13조 2)항에서 규정한 당해연도 분의 부상에 대해 수상자 전원에게 균분 지급한다.
- 3) 제12조 2)항에서 규정한 단체가 수상하는 경우는 1인 수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.
- 4)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상패와 부상은 김옥준상 기금의 과실금으로 충당한다.

**제14조(조사 및 자문)** 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업적을 조사하며, 해당 부문별로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**제15조(추천 및 심사과정의 비공개)** 상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내용은 수상후보자의 추천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며, 심사과정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접수하지 아니한다.

### 제5장 수상자 확정 및 시상

**제16조(수상자 확정)** 운영위원회에서는 제5조 3항 및 제6조 2항에 근거하여 수상자를 심의,

확정한다.

**제17조(수상결정 사실의 통보)** 수상자 발표는 해당년도 시상일 최소 10일 이전 본인에게 서신으로 통보한다.

**제18조(시상일)** 시상식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에서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9조(시상자)** 상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인사가 수여한다.

**제20조(시상식 참석)** 수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상식 및 관련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, 국내에 부재중인 경우 또는 질병 등 본인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.

**제21조(규정의 개폐)** 본 규정의 개폐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본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과 전문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시행일 조정)** 김옥준상 시행과 관련한 일정은 필요에 따라 조정 시행할 수 있다.